第299回國會 (臨時會)

空港・發電所・液化天然가스引受 基地周邊對策特別委員會會議錄

第 4 號

國 會 事 務 處

- 日 時 2011年4月28日(木)
- 場所知識經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 1. 혀안보고
 - 한국가스공사
 - 한국서부발전(군산LNG복합화력발전소)
- 한국공항공사
- 2.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 3. 군용비행장 등 소음·진동 방지 및 주변지역의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
- 4.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
- 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13.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1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공항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에 관한 특별법안

審査된案件

- 1. 현안보고
- 한국가스공사
- 한국서부발전(군산LNG복합화력발전소)
- 한국공항공사
- 2.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김재균·이용 섭・김영진・양승조・이광재・이시종・김진표・이춘석・김유정・김우남・김재윤・박선숙・김희 철 · 손범규 · 유성엽 · 강기갑 · 오제세 · 강창일 · 이진삼 · 이인기 · 앙정례 · 박종희 · 최인기 · 김충 조·변재일·강기정·남경필·홍재형·박주선 의원 발의)················
- 3. 군용비행장 등 소음ㆍ진동 방지 및 주변지역의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변웅전 의원 대표발의)(변웅 전ㆍ원희목ㆍ최영희ㆍ전현희ㆍ박은수ㆍ전혜숙ㆍ윤석용ㆍ양승조ㆍ이진삼ㆍ류근찬 의원 발의) …………8
- 4.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백원우·이

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안경률·박상은·신상 진 · 정장선 · 구본철 · 이한성 · 김정권 · 양정례 · 이학재 · 조경태 · 안상수 · 김희철 · 김춘진 · 김우 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이한성·조경태· 김효석ㆍ김성곤ㆍ김춘진ㆍ김종률ㆍ우유근ㆍ김재윤ㆍ김동철ㆍ김성순ㆍ유선호 의원 발의)8 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환 의원 대표발의)(윤두환ㆍ이해봉ㆍ윤 영·허천·김정권·박상은·백성운·송광호·신영수·박기춘 의원 발의)8 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신학용·이성 헌 · 주성영 · 안효대 · 이사철 · 이인기 · 정희수 · 정해걸 · 송영선 · 박준선 · 윤영 · 조승수 · 이한성 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수 의원 대표발의)(조승수·김우남·박은 수 · 고승덕 · 강기갑 · 권영길 · 홍희덕 · 유원일 · 곽정숙 · 정동영 의원 발의)8 1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낙성 의원 대표발의)(김낙성·임영호·권선택· 김용구ㆍ이낙연ㆍ윤영ㆍ강기갑ㆍ임동규ㆍ이명수ㆍ이진삼ㆍ류근찬ㆍ김창수 의원 발의)8 1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강기갑・김정 권ㆍ이한성ㆍ유정현ㆍ유성엽ㆍ허원제ㆍ김성동ㆍ오제세ㆍ원희목 의원 발의) 12. 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우여 의원 대표발의)(황우여·신학용· 이한성 · 허원제 · 정장선 · 이학재 · 고승덕 · 조전혁 · 김소남 · 구본철 · 김효재 · 박상은 · 이정선 · 홍일표 • 조진형 의원 발의)8 13.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윤성 의원 대표발의)(이윤성ㆍ이경재ㆍ 송영길ㆍ이명규ㆍ박종희ㆍ이군현ㆍ구본철ㆍ윤상현ㆍ임두성ㆍ허범도ㆍ현기환 의원 발의) ……….9 1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 대·진성호·구상찬·정두언·이병석·정옥임·조문환·원혜영·차명진·허태열 의원 발의) ···· 9

1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 · 이윤석·최규성·조영택·김진표·박은수·강기정·장병완·김재균·김재윤 의원 발의) ·····9
16. 공항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에 관한 특별법안(구상찬 의원 대표발의)(구상찬·원혜영·이인기·권영진·김용태·김성곤·이상권·김성태·박보환·정해결·김옥이 의원 발의) ················9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이군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제4차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주변대책특별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남원희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 다.

○**입법조사관 남원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군현**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현안이 있는 소속기관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은 후 법안을 상정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상정 시 지식경제부 및 국토해양부장관은

각각 정상회담과 법사위 회의 관계로 부득이 차관이 대신 참석하게 되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1. 현안보고

- 한국가스공사
- 한국서부발전(군산LNG복합화력발전소)
- 한국공항공사

(10시15분)

○위원장 이군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국가 스공사, 군산LNG복합화력발전소, 한국공항공사 의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현안보고와 관련해서 한국 및 인천국제공 항공사 사장이 항공 관련 국제회의 참석으로 각 각 부사장이 출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김동연 예산실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기타 배석하신 기관장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 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군 산LNG복합화력발전소,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특 위 관련 현안보고를 계속해서 들은 다음에 위원 님들의 질의는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사장 나오셔 서 인사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주강수 존경하는 공항·발 전소・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주변대책특별위원회 이군현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국가스공사 주강수 사장입니다.

저희 공사 통영 생산기지 어업피해 보상 추진 방안에 대한 현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배경, 어업피해 보상절차, 진행경위, 주요 쟁점사항, 향후 추진방안 순이 되 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추진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스공사는 통영에 소재한 안정국가산업 단지 내에 통영 생산기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99 년 8월 어민들과 건설 중 예상되는 어업피해에 대한 손실 보상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안정항로 9 km 및 매립전 해변 반경 3km 내의 총 2750건의 피해물건에 대해 458억 원의 보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건설 중 피해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 완료하였 지만 어민들이 기지운영 및 제2부두 건설공사와 관련된 어업피해를 주장하며 그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요구하여 별도의 보상 절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페이지 하단에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어업피해 보상의 일반적인 절차를 그림으 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페이지 진행경위입니다.

2008년 8월 7일 어민 측과 통영기지 운영 및 제2부두 건설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 약정을 체결 하였으며 2008년 10월 21일 어업피해조사 용역계 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0년 12월에 용역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공사 측 학자들이 보고서를 검 토한 결과 수온검증 자료가 조작된 것으로 사료 되는 등 중요한 기술적 이견 사항이 제기되었습 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용역기관과 토론회를 개최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지난 2월 28일 용 역계약 해제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용역계약 해제 통보 이후에도 원만히 본 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3월 18일에 부경대 학자 26명, 어민대표 4명, 공사 측 10명이 참여한 가운 데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물론 부경대 측에 서는 해제된 사항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해 왔습니다.

또한 4월 19일에는 지경부에서도 전문가 협의 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기울이 고 있는 중입니다.

3페이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 니다.

현재 쟁점사항은 어민 측의 용역결과보고서에 따른 조속한 어업피해 보상 요구와 부경대와의 피해범위 산정 등에 대한 기술적 의견 불일치에 있습니다.

어민 측의 어업피해 보상 요구에 대해서는 어 업피해가 있다면 그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지만 보상금은 요금에 반영되어 일반국민에게 전가되 므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용역수행기관인 부경대와 저희 공사는 피해범위와 피해물건을 산정하는 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치모형의 수온 검증자료 등 4개 사항에 대하여 용역수행기관인 부경대의 학자들 과 공사 측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존재하고 있습 니다.

이에 대해 부경대 입장은 피해범위 및 피해물 건 등은 수정할 수 없으며 피해율 부분에 대하여 는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현재 견지하고 있 습니다.

4페이지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 니다.

현 상황하에서 본 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세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법적인 해결, 두 번째는 재조사 용역, 세 번째는 당사자 간의 합리적인 협의를 통한 해 결이 되겠습니다.

현재 법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또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되고 재조사 용역을 하더라도 학 술적으로 학자들 간에 이견이 존재할 수 있으므 로 지금 어민들과 저희들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서 또한 법의 한도 내에서 해결을 모색하고 있습

니다.

따라서 저희 공사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부·용역기관·어민 측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어업피해 보상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 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군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산LNG복합화력발전소 현안에 대해서 김문덕 한국서부발전 사장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문덕 안녕하십니까?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군산복합화력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한편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민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 다.

서천군에서 서천군 어민들이 저희 군산복합화력 운영으로 인해서 해수온도 상승, 어족자원 고 갈 등을 이유로 어업피해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 입니다.

요구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주된 것이 군산복합 해수취수설비를 72시간 동안 감시가능토록 공개하라, 그리고 온배수로 인한 어업 피해조사 시행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허가가 된 어업권자들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은 무허가 어업권자 또는 온배수로 인한 수온상승 1℃ 범위 밖의 어업권자 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발전소의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 산복합은 작년 5월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 운전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전북 군산시 경암동, 용량 은 718.4MW, 가스터빈 2대와 증기터빈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즉 군산시에서 적 극적인 건설 유치를 했고 또 전에 있던 기존 군 산화력이 오래 됐기 때문에 그 기존 부지의 활용 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전에 있던 발전소를 신규 복합화력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10월부터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하고 또 2006년 말에 정부에 제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고 2007년 7월에 환경영향평가 정부 협의를 완료하여서 2007년 8월에 건설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 발전소를 준공하고 상업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어업피해조사 및 보상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설 과정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위해서 어업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보상은 지금 현재 시행 중 에 있습니다.

보상 대상으로 된 것은 군산시 그리고 서천군 실뱀장어 어업권자들과 보상협약이 체결되었고, 그 합의서에 따라서 어업피해조사를 했고요. 조 사기관은 군산대 수산과학연구원, 1년 동안 조사 를 해서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감정평가 및 보 상 금액이 산정되었고 금년 4월부터 어업권자에 보상금 지급이 시작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 니다.

온배수 배출지역 즉, 수온이 1℃ 이상 상승 수역 내에 보상이 진행 중인 어업권 외에 다른 어업 피해는 이제 없는 것으로 여기서 조사되었지만 어민들은 영향수역이 그보다 넓다, 그리고 취수 과정에서 치어 유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의 협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작년 말부터수차례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서천어민들이 군산복합 앞에서 집회를 한 사실이 있었고, 또 어민대표자와 서천군 수협 회의실에서 저희 사업소 담당자들이 회의를 했고, 그 이외에도 수차례 제가 직접 어민 상대로 협의도 했고 여러 가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쟁점 사항이 세 가지인데 첫째, 취수설비 72시간 정보 공개를 하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설 비와 인명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 한다 하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민 추천 기관으로 환경영향조사를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천 지역의 조사지점 및 항목 추가 요청 시 반영하고, 환경영향조사도 서천군에서 추천하는 기관과 또 저희가 하는 기관이 공동 조사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다만 어업피해조사 시행에 대해서 저희의 협의는 환경영향평가 조사 결과 실제적으로 피해가확인 시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업피해조사를 실시하게 협의는 되었는데, 그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양환경영향조사는 어민 측과 공동

수행해서 온배수의 영향범위를 조사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조사 결과 온배수 1℃ 상승 수역 내가 된다면, 그 어업권이 포함된다면 저희가 어업피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정보 제공은 온배수 영향 관련 객관적 검증 자료 를 투명하게 어민 측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논란이 있는 피해조사의 확대 범 위는 저희는 1℃ 상승 수역이, 상승이 예측되는 지역에 대해서 피해 조사를 한다는 원칙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민들이 납득을 안 하고 있는 상 황인데 그것은 대화를 지속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군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한국공항공사 배용수 부사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공항공사부사장 배용수 안녕하십니까? 한 국공항공사 부사장 배용수입니다.

해외출장 중인 사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 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들을 모시고 저희 공사의 소음대책 현황을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 게 생각합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소음대책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소음대책의 법적 근거는 91년부터 항공법에 시 행 근거를 마련하여 소음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 으며, 지난해에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 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업 범위가 대 폭 확대되었습니다.

대상 공항은 김포 김해 제주 여수 및 울산공항 등 5개 공항입니다.

소음대책사업 대상은 소음도에 따라 1종부터 3 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주택방음시설에 1331억 원, 학교 방음 및 냉방시설에 446억 원, 주민지원사업에 368억 원을 지원하는 등 총 2222억 원을 집행한 바 있 습니다.

지난해 수립한 소음대책 중기계획의 기본방향 은 소음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소 및 주민복지 강 화에 있으며,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26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기존 사업인 주택방음시설 잔여물량은 2015년

까지, 그리고 학교 방음 및 냉방시설은 2011년까 지 각각 완료할 예정이며, 신규 사업인 주택냉방 시설 설치사업은 국토부 고시 기준에 따라 추진 하고,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은 KBS와 협약 체결 을 완료하였으며, 학교 및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도 하절기 냉방 전기료를 지원할 계획입니 다.

7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사업계획입니다.

금년은 총 400억 원의 예산으로 주택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3개 학교에 대한 방음 및 냉방시 설 설치, TV 수신료 지원, 냉방 전기료 지원 등 의 사업에 3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주민복 지사업에도 1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은 기초배분계수와 피 해면적 및 인구계수를 고려하여 수립하였으며, 각 공항별로 주민지원사업비 100억 원을 아래와 같이 배분하였습니다.

금년도 공항별 추진 내용으로는 김해공항은 총 15건에 대하여 16억 원을 지원하였고, 김포와 나 머지 공항은 현재 지자체와 사업계획을 협의 중 에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사업이 확정되면 예 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한국공항공사 소음대책사업 현 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군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오후의 본 회의를 감안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 신 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아니하므 로....

- ○崔鉛熙 委員 아니, 질의할 것 있어요.
- ○**박상은 위원** 결의부터 하고 질의하는 것 아니 에요?
- **○위원장 이군현** 아니, 결의는 지금 열한 명이 되어야 되는데…… 아, 다 되었습니까?

그런데 선배님 질의가 지금 이 세 기관에 대한 질의인가요, 아니면 법안에 대한 질의인가요?

- ○崔鉛熙 委員 법안은 아직 안 했잖아요.
- ○위원장 이군현 법안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 세 기관에 대한……
- ○崔鉛熙 委員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는 겁

니다.

○위원장 이군현 그러면 하십시오. 없다고 해서…… ○崔鉛熙 委員 가스공사 주강수 사장님께 묻습 니다.

여기에 보니까 통영생산기지에 대한 어업피해 보상을 지금 현안보고를 하셨는데요.

지금 강원도 삼척시에서 LNG 생산기지 공사 중에 거기도 어업인들이 어업피해보상을 요구하 고 있잖아요?

- ○한국가스공사사장 주강수 예.
- ○崔鉛熙 委員 그런데 그것도 현안 아닙니까?
- ○한국가스공사사장 주강수 요전번에 현안으로······
- 〇崔鉛熙 委員 일단 종결된 부분에서 다시 문제 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만 하신다 이것이지요?
- ○한국가스공사사장 주강수 예, 지금 문제된 것 만 하는 겁니다.
- ○崔鉛熙 委員 그러면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릴 게요.

어업피해보상은 지금 동해안에 거의 국가시설들이 들어올 때 문제 제기가 되는데 어업인들이참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특히 어촌계라든가, 어촌계는 공적인 조직이 있으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조직되지 않은 맨손어업이 있습니다. 무면허 어업은 차치하고라도.

맨손어업을 하는 사람들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데 지금 삼척의 예를 보니까 현황을 제가 저번에 들어 보았는데, 용역을 주어서 연말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한다, 협의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맨손어업은 미역이라든가 전복이라든가 멍게라든가, 그러니까 아주 소규모, 그러니까 어업인들 중에서도 아주 열악한 조건하에서 소득을올리거나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스공사에서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전체가 큰 덩어리가 잘 타결되었다 하더라도 작은 부분에 문제가 자 꾸 생기기 시작하면 전체가 또 흐트러집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할 때도 맨손어업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다 주십시오.

○한국가스공사사장 주강수 예, 알겠습니다.

○崔鉛熙 委員 왜 그런가 하면 가스공사는 가스 공사 나름대로, 발전소는 발전소 나름대로—마찬 가지예요, 동서발전도—자기 회사에서 통상적으 로, 관례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역을 준 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빠지냐고 시비를 걸고 또 용역 결과, 특히 온수 배출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피해가 있습니다. 피해가 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한 용역 결과는 어떻게된 것인지 제가 보니까 그 부분은 거의 인정하지않으려는 용역기관들의 의지가 일부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어느쪽이든지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목록은 용역을 일단 다 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용역 결과가, 이 공사가 자꾸지연되잖아요, 용역 결과가 나와서 빨리 보상, 1차 보상 협의를 해서 끝내고 그다음에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을 해서, 또 용역을 추가로 주더라도 빨리 한꺼번에 주는 것이 더 유리하잖아요?

- **○한국가스공사사장 주강수** 예, 알겠습니다.
- ○崔鉛熙 委員 그렇게 해서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다 용역을 주어야 된다.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지, 이렇게 보면 국책기관들이, 공기업들 이 보면 관례에 따라서 이것은 전에 없다든가 이 러면서 자꾸 제외하는 버릇들이 있어요.

우리 지역은 제가 직접 챙기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주 사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현지 지역 본부장도 있잖아요?

- ○한국가스공사사장 주강수 예.
- ○崔鉛熙 委員 그래서 어업인들의 요구를 철저하게 들어서 용역에 포함시키고 가능하면 피해보상도 긍정적으로 해 주어야지, 특히 온수 부분의 범위 문제에 관해서 자꾸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범위를 '여기까지다. 관례가 이것……' 거기까지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일단 다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옳다.

그다음에 보상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특히 동해안 쪽에는 거의 오적이 소멸되어 가지고 고기가 안 잡혀요. 아니, 동해안이 오징어 갖고 먹고 사는데 요즘 오징어가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이게 온수의 영향이라는 것이 어업인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이러한 점을, 사장님께서 한번 내려가셔서 어 업인들하고 간담회를 좀…… 제가 동석할 테니까 요.

- ○**한국가스공사사장 주강수** 예, 잘 알겠습니다.
- ○崔鉛熙 委員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군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金容九 委員 서부발전 김 사장님!
-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문덕 예.
- ○金容九 委員 어업피해 영향조사 건의를 금방 여기 와서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발전소로 서 부적절한 위치를 선정했다' 그러는 것은 불가 피한 사정인데 그 피해상황이 나와 있거든요.

금강하구둑, 북측도류제, 북방파제 등 인공구조 물 건설 이후로 토사적이 심각하게 2m까지 쌓여 가지고 육지화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이고 또 취수·배수, 수온상승에 따른 부작용 문제, 그런 데 제가 위치선정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 니고 이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여기에 따른 대 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발전기 중 흡입구와 터빈에서 서식하는 파래 등 해초류 를 제거하기 위해서 차아염소산소다를 정기적으 로 사용해서 해양 생태계가 파괴가 된다 이런 문 제, 그다음에 또 무언가 하면 사전환경영향평가 의 직접적인 피해 지역인 서천해역 어업권 등에 대한 조사가 누락됐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 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떠신지, 사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문덕 입지의 문 제는 제가 아까 현안보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저 희가 과거에 군산화력을 신규 깨끗한 발전소로, 복합화력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같은 입지를 선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 조사 에는 그 입지가 현재까지는 온배수의 영향이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지만 그게 앞으로 거기에 퇴적이 되어서 점점 하상이 올라오고 또 금강에 많은 댐이 건설되어서 수량이 점점 줄어든다는 게 전망이 되면 저희가 다른 기술적인 방안을 하 려고 스터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대책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입지의 문제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하 면 지금은 온 발전기 · 복수기를 식히기 위해서 바닷물을 끌어들였다 다시 온배수를 내놓는데 쿨 링타워(Cooling tower)법으로 해서 바닷물을 사 용하지 않고 내륙에 있는 물을 그냥 폐쇄회로로 돌려서 하는 방향,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차아염소산 사용 문제는 방류할 때 저희가 농도를 0.1ppm 이하로 규제를 해서 영향 이 없다는 것은 다 증명이 된 사실이고 그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햇빛을 받게 되면 차아염소산 효과가 금방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런 문제는 지금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 다.

○金容九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냉각수를 빨 아들이느라고 그 유속이 상당히. 굉장히 빠른 모 양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냉각수를 바깥으로 내 보내잖아요? 그게 하루에 한 130만t이나 됩니까?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문덕** 제가 확실히 수치는

○金容九 委員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연 간 한 5억t 정도가 나오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 란이 취수구에 빨려 들어가서 이 자원이 다 죽는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야 되지 않겠어요?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문덕** 그래서 그 것은 지금 주민들과 함께 얼마나 치어들이 빨려 들어오나 이런 조사는 같이 하기로 했고요. 그래 서 그게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저희가 대 책을 강구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 본적인 대책은 수량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장 기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근본 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金容九 委員 그러면 서천해역 어업권에 대한 이게…… 이 사람들이 빠졌다고 주장을 하는데 빠진 겁니까?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문덕** 그것은 저 희가……

○金容九 委員 조사에서 누락을 시켰다 이런 얘 기지요?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문덕** 누락이 된 것은 발전소 반경 5km 내외에서는 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천군에 가서 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군산시에는 설명회를 하고 서천군에 설명회가 누 락됐다는 것이지, 또 1℃ 상승하는 해역에 대해 서는 다 피해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서천 군에도 지금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金容九 委員 그러면 이분들이 별도로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까, 이게?

-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문덕** 그렇습니다.
- ○**金容九 委員** 서천해역 어업권 가진 분들이 조 사에서 빠졌다, 지금 주장을 하는데.
-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문덕 지금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업 권을 정식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1℃ 상승하는 해역 내에 안 계신 그런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 ○金容九 委員 좌우간 민원사항을 이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잘 챙겨 주십시오.
-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문덕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군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 시지 아니하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께서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이상 한 분의 서면질의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정 정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과 이한성 위원께서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이상 두 분의 서면질의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잠시 정돈하고자 하오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조금 사정이 있으셔서 의결사항부터 먼저 처리하려고 합니다.

- 2.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 · 김재균 · 이용섭 · 김영진 · 양승조 · 이광 재 · 이시종 · 김진표 · 이춘석 · 김유정 · 김우남 · 김재윤 · 박선숙 · 김희철 · 손범규 · 유성엽 · 강기갑 · 오제세 · 강창일 · 이진 삼 · 이인기 · 앙정례 · 박종희 · 최인기 · 김충조 · 변재일 · 강기정 · 남경필 · 홍재형 · 박주선 의원 발의)
- 3. 군용비행장 등 소음·진동 방지 및 주변지역의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변웅전 의원 대표발의)(변웅전·원희목·최영희·전현희·박은수·전혜숙·윤석용·양승조·이진삼·류근찬 의원 발의)
- 4.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 · 백원우·이춘석·박은수·양승조·백재

- 현·김우남·최규성·최규식·이석현 의원 발의)
- 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안경률・ 박상은・신상진・정장선・구본철・이한 성・김정권・양정례・이학재・조경태・안 상수・김희철・김춘진・김우남・이진삼・ 강길부・손범규・김동성 의원 발의)
- 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 이한성·조경태·김효석·김성곤·김춘 진·김종률·우윤근·김재윤·김동철·김 성순·유선호 의원 발의)
- 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윤두환 의원 대표발의)(윤두환· 이해봉·윤영·허천·김정권·박상은·백 성운·송광호·신영수·박기춘 의원 발의)
- 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신 학용·이성헌·주성영·안효대·이사철·이 인기·정희수·정해결·송영선·박준선·윤 영·조승수·이한성·신영수·이해봉·이명 수·주호영·이낙연 의원 발의)
- 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조승수 의원 대표발의)(조승수· 김우남·박은수·고승덕·강기갑·권영 길·홍희덕·유원일·곽정숙·정동영 의원 발의)
- 1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김낙성 의원 대표발의)(김낙성· 임영호·권선택·김용구·이낙연·윤영· 강기갑·임동규·이명수·이진삼·류근 찬·김창수 의원 발의)
- 1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 강기갑·김정권·이한성·유정현·유성 엽·허원제·김성동·오제세·원희목 의원 발의)
- 12. 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우여 의원 대표발의)(황우여 · 신학용·이한성·허원제·정장선·이학재·고승덕·조전혁·김소남·구본철·김효재·박상은·이정선·홍일표·조진형의원 발의)
- 13.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윤성 의원 대표발의)(이윤 성 · 이경재 · 송영길 · 이명규 · 박종희 · 이 군현 · 구본철 · 윤상현 · 임두성 · 허범도 · 현기환 의원 발의)

- 1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 표발의)(김용태·진성호·구상찬·정두언· 이병석 · 정옥임 · 조문환 · 원혜영 · 차명 진 · 허태열 의원 발의)
- 1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 표발의)(강창일·이윤석·최규성·조영택· 김진표 · 박은수 · 강기정 · 장병완 · 김재 균·김재윤 의원 발의)
- 16. 공항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에 관한 특별 법안(구상찬 의원 대표발의)(구상찬·원혜 영 · 이인기 · 권영진 · 김용태 · 김성곤 · 이 상권·김성태·박보환·정해결·김옥이 의 원 발의)

(10시55분)

○위원장 이군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6항까지 일괄 상정합니 다.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결사항을 미리 처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안건 중 제2항부터 제16항까지의 법안은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해당 법안심사소위원회 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계속해서 들은 다음에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1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제5항부터 제13항 법률안에 대해서 김호성 수 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호성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김호성 수석입니다.

시간관계상 주요쟁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 발전

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 확대에 관 한 검토의견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검토보고서 11페 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에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소 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 터 반경 5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지역으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기 설치지 점으로부터 반경 10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이 속하는 시·군·자치구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 니다.

1989년 법 제정 당시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 를 발전소로부터 반경 5km 이내로 정한 것은 당 시 민원 발생지역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을 고 려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 기존 원자력발전소 건설 지역에 추가로 발전기 등을 설치하여 발전 설비 용량이 커지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민원 발생지 역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고, 원자력발전소에 대 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온배수의 영향범위가 2~8 ㎞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일부 원자력발 전소 주변지역의 경우 법 제정 당시 고려한 범위 에 비해 광범위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 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에 대한 확 대요구는 법 제정 당시에 비해 변화된 현실에 부 합하는 측면이 있고, 또한 여타 발전소에 비해 유사 시 피해범위가 넓어 지역주민의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원자력발전소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정당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측면이 있습니 다.

그러나 확대되는 지역에 대하여 현행 주변지역 수준으로 지원금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5618억 원의 재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 로 전망되는바, 일반회계의 출연 등을 통한 기금 재원의 확충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전 기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의 증가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반경 10km 이내로 확대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지원 범위 확대에 따른 재원부담 문제 및 전기요금 인 상 가능성, 향후 유사한 문제의 반복 가능성 등 을 감안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전력사업 홍보사업의 시행자 변경에 대하여 검 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 제10조제1항제3호는 전력사업 홍보사업을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1조제3호는 홍보사업의 시행자를 '원 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 원자력에 한정하여 홍보사 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홍보사업의 시행자를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등을 포함한 전력사업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런 식으로 변경하여 신·재생에너지 등을 포함한 전력사업 에 관한 홍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 니다.

현행법은 홍보사업을 전력사업에 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의 시행자는 원자력에 한정하여 홍보를 실시하는 원자력문화재단만을 규정하고 있고, 실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전력사업 홍보에 있어서도 원자력문화재단의 홍보사업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원자력에 대한 홍보에 비해 기타 발전원에 대한 홍보는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홍보사업의 시행자를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등을 포함한 전력사업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렇게 변경하려는 개정안은 현행법의 체계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보다 균형 있는 홍보사업의 실시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현행법의 제정목적이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개발을 촉진하는 데 있으므로 동법에 따른 홍보사업역시 전력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법체계적으로 보다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개정 안은 타당한 입법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한전, 에 너지관리공단, 전기안전공사 등이 홍보사업을 실 시하고 있으므로 사업 간 유사·중복성 및 예산 지원의 중복 지원 등의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재원 확대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을 추가적으로 감안하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2전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여 의원과 이윤성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 하신 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 한 특별법안은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이 일정 범위 이내의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사업을 실 시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액화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 고자 하는 것입니다.

2개의 제정법률안은 법률의 구조나 내용 등에 있어서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을 반경 5km 이내의 육지 및도서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지역으로 하고,지정된 주변지역에 기본지원사업·주민복지지원사업 등의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필요한 재원은 가스사용자의 부담금 그리고 인수기지 운영자 등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국가기금을 만들어충당하자는 이러한 골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 니다.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입법 추 진 경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대 국회에서도 황우여 의원과 이윤성 의원께서는 동일한 입법취지를 각각 대표발의하 셨고, 당시 산자위원회에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 원회에서 논의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하여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관하여 LNG 저장시설의 위험성 여부, 국민 부담 정도, 다른 에너지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지적되면서 결론을 내리지못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LNG 인수기지 외에석유비축기지 주변지역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연구용역이 실시되었는데 법제화가 불필요하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제시됨으로써 더 이상의 법안심사가 진행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 29페이지로 넘 어가겠습니다.

2건의 법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2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에너지시설은 국민 다수에게 이익 을 가져다주는 공공재이지만 해당 에너지시설이 위치한 특정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잠재적인 안전 사고 또는 환경오염 가능성에 따른 정신적 피해, 지가 하락 등의 재산적 피해 등을 가져옴으로써 편익과 비용 간의 구조적인 불공평을 야기하고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 니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법률을 제정하여 일 정 기준 이상의 보상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에너지시설 주변지역의 실제 피해 정도와 현행 법령체계와의 조화 문제를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 다.

LNG 인수기지의 경우 그 안전성 및 친환경성 이 객관적으로 검증됨으로써 예외적인 잠재적 사 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주변지역 주민의 심적 불 안 정도만이 존재하고 있고, 소극적 재산상 피해 상황도 뚜렷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은 원자력발전소의 위 험성이, 댐 주변지역은 수몰지역 주변의 낙후 등 이 주요 입법원인으로 작용하여 법률이 제정된 점에 비추어 LNG 인수기지의 위험성 등이 이에 비견될 정도라고 보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 다.

특히 잠재적인 사고발생 가능성도 LPG 저장시 설이나 석유비축기지, 석유화학시설 등의 다른 에너지시설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이들 시설 에 우선하여 지원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국민적 법감정에 반할 소지가 높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발전소 및 댐 등 현행 주변지역 법률에 상응하는 정도의 피해를 주장하며 유사내용의 법제화를 요 구하는 것은 현행 법률체계와 조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현행 수입부과금 및 안전관리부담금 외에 새로운 부담금을 신설하여 가스사용자의 도시가스요금에 부과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은 제도도입에 따른 사회적 이익이 높은 정책수 단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2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LNG 인수기지의 안전성 그리고 친환경성, 현행 법령체계와의 조 화 여부, 다른 에너지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재원

마련의 적정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원문을 참조해 주시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군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2항부터 제4항 및 제14항부터 제16항 에 대하여 문병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철** 전문위원입니다.

국방부 및 국토해양부 소관의 군공항과 민간공 항 소음피해 방지 관련 법률안을 함께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2항에서 4항까지 국방부 소관의 군용비행장의 소음피해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김동철 의원안, 변웅전 의원안, 강기정 의원안 등 3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이들 3건의 제정 법률안은 2009년과 2010년 소관위원회인 국방위 원회에서 상정되었고 아직 심의 중에 있으며, 이 들 3건의 법률안 이외에도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 장 등 군사시설 전반의 소음피해를 대상으로 하 는 6건의 제정법률안과 2건의 군공항 이전을 내 용으로 하는 제정법률안이 있으나 이들은 우리 특별위원회로 재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회부된 이들 3건의 법률안은 군비행장의 소음발생지역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신규 건축제한 이전보 상 및 토지매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비행장은 민·군 겸용 공항을 포함하여 48개에 달하고 있고, 이 중에서 소음대 책이 필요한 군용비행장은 43개인 것으로 추정되 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용비행장 주변은 도시의 확장 발전에 따라 비행장 주변지역의 주거지 형 성 및 인구밀집도 증가와 이ㆍ착륙 항공기 증가 등으로 인하여 군용항공기 소음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소음 문제는 점차 집단적인 청원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추세에 있는 등 군용비행 장 등의 소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 습니다.

비행장 주변의 소음피해대책과 관련하여 현행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률에서는 민간공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바 군용비행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근거가 마련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등을 대상으로 소음·진동대책 지역을 지정하고, 소음·진동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며, 건축제한과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 등을 함께 마련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들 제정법안의 입법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동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제정안에서는 적게는 5조 3000억 원에서 많게는 25조까지 추산하고 있는데 이렇듯 법률안마다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소음피해 기준 및 적용대상, 추계를 위한 가정, 추계연도, 추계작성자 등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2009년 12월에 제출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의한 소요예산을 보면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도가 85웨클 이상인지역을 대상으로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총 예산을 8562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는 바 이는 의원안과는 달리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 비용이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하튼 군용비행장 주변의 소음과 관련한 특별 법 제정은 예산 확보 문제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미룰 수 없는 시점까지 와 있으며, 소음 피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 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민간공항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규정하되 지원하려는 공공요금의 종류와 지원방법 등에 관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정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지원 대상 공공요금의 종류 및 지원방법과 지원대상자 의 범위 등에 관하여 먼저 관계부처 간의 협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

의한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소음대책지역 주민복지사업으로 설치하는 도서관, 체육공원 등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 외에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한 주민복지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복지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공항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상찬 의원이 대표발 의한 공항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에 관한 특별법 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에서는 공항별로 고도제한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도시의 확장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 제한표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항별로 차등 고시할 수 있도록 하 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일률적인 고도제한에 따라 공항주변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 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자연적 지형 등 을 고려한 차등 적용을 허용함으로써 재산권 보 장 확대 등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장애물 제한표면은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정한 국제기준을 체약 국이 준수하고 있는 사항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전이 · 수평표면은 국제기준과 동일하나 진입표면과 원추표면의 경우에는 국제기준보다 다소 미달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애물 제한표면 고시 이후 도시의 확장 등의 사유로 각 공항별 장애물 제한표면을 차등 고시할 수 있도록하면 국제기준과의 차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점을 감안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 측면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군현 이어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진표 위원** 경기도 수원 영통 출신 민주당의 김진표 위원입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관련 법률안 보고서입니다.

4쪽에 보면, 소음대책이 필요한 군용비행장 43 개를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이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술항공작전기지의 경우…… 장관 님 보셨습니까? 전술항공작전기지의 경우에는 끊 임없이 기동 훈련과 조종사의 훈련이 계속되는 그런 공항으로 다른 민간공항이나 또 지원항공기 지라든가 헬기전용기지 등과는 소음 피해 및 고 도 제한 피해의 정도가 아주 현저한 차이가 있다 고 생각해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미 20년 전 에 전술항공작전기지를 대개 소음 피해나 고도 제한 피해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안가 섬이라든가 사막, 이런 지대로 다 이전을 완료했 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우에 남북이 대치 상태에 있다 는, 또 국토가 상대적으로 좁다는 이런 특성 때 문에 여태까지 내려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 문위원 보고서 바로 옆 페이지 5페이지 보십시 오. 현재 소송이 들어와 있는 원고가 56만 명입 니다. 그리고 확정된 법원 판결 보상금액이 1000 억인데 이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 다. 그리고 이와 같은 피해 소송은 한번 소송해 서 승리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 5년 반복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선진국은 소음 피해가 심각한 전술항공작전기지 같은 경우에는 군공항 의 정상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서 다 이전 계획을 만든 것입니다.

김관진 장관께서 국방부장관으로 취임하시면서 여러 가지 군 개혁을 위한 좋은 대안들을 발표하 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도 좀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국가 백년 대계를 내다보고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 니다.

그래서 저는 군용기지의 이전 촉진 지원을 위 한 법안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 방위에 상정되어 있는데 그 법안을 꼭 그대로 관 철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정신에 따라서 국방부 가 좀 검토하셔서 근본대책을 만들어야지, 여기 지금 의원들이 낸 3개 법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면 작게는 5조부터 많게는 25조의 돈이 들어갑니 다.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대책을 세워서 전체 군용기지에 대 한 분류와 단계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의

말씀에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지적하신 내용 에 대해서는 전부 동의를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특히 경기도 지역의 인구 밀집성을 고려할 적에 이제까지 군에서는 입지를 찾아봤으나 마땅 한 대안이 나오지 않는데 5월 중에 용역을 별도 로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추가적인 자리를 찾아보고, 그렇게 된 연후에 군하고 지방자치단 체하고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 점에 관해서도 제가 국방부장 관께 한 가지 고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군 내부에, 예를 들면 공군의 전문가들에게만 의 뢰해서는 안 될 거고요. 용역을 주기로 하셨다니 까 다행인데 용역도 복수의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 겠는데, 외국의 경우에 우리 수도권처럼 땅값이 비싼 지역을 옮기는 그런 비용을 상대적으로 계 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인천 공항과의 관제구역이 겹친다는 문제라든지 또 비 용의 문제 같은 것은 좀 발상의 전환을 하면, 예 를 들면 인공섬을 만든다든지, 다른 나라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인천공항과의 관제 구역 문제도 좀 더 기술적으로 좋은 방법을 찾으 면 저는 인접지에, 수원비행장과 위도를 같이 시 화매립지라든가 그쪽에서 좋은 대안을, 적지를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군현 다음, 유승민 위원님 질의하시 겠습니다.

○劉承旼 委員 유승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군현 예.

○劉承旼 委員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 지만 군 소음법 관련해서는 이 특위에 넘어온 소 음법이 3개입니다. 오늘 검토의견 나온 게 3개인 데 지금 현재 국방위원회에 군 소음법 관련된 게 정부안까지 포함해서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서 국방위원회하고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오늘 상정 한 3개의 군용비행장 소음법뿐만 아니라 국방위 에 계류 중인 국방부가 제출한 군 소음법을 포함

한 6개의 법안은 우리 특위가 다시 국방위로부터 재 회부를 받아서 같이 논의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3개의 법안만 의논해서 결론을 도저히 낼수가 없는 게 정부의 의견을 담은 법안이 국방위에 지금 현재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 소음법, 군용비행장 및…… 여기에 우리 특위 이름을 '공항'이라고 해서 아마 군용사격장이나 나머지군사시설이 포함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주 사소한 문제고 국방위에 지금 상정된 6개 법안을 우리 특위가 더 가지고 와서 총 9개 법안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야 결론을내릴 수 있다.

위원장님, 제 말씀 듣습니까?

- **○위원장 이군현** 예, 듣고 있습니다.
- ○劉承旼 委員 9개 법안을 같이 의논해야 의미가 있다. 이런 의견을 먼저 드립니다.

또 하나, 방금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용기지 이전에 관해서는 그것은 국방위에서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그래서 군용기지 이전에 대해서는 이 특위가 법안을 가지고 오기가곤란하다. 그래서 국방부가 지금 내부적으로 마련해서 관계부처하고 협의 중인 군용비행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존경하는 김진표 의원님이 이미 제출해 놓으신 그 법안, 2건 있습니다. 그 3건을 묶어서 그것은 국방위에서 논의를하고 나머지 9건의 소음 관련 법안은 이 특위에서 논의하는 게 옳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 신······

기재부 예산실장 와 있습니까?

-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김동연 예.
- ○劉承旼 委員 2차관 못 오셨나 보지요?
-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김동연 예.
- ○劉承旼 委員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차별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오랫동안 아주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방부가 군 소음법을, 아주 괜찮은 군소음법을 진작 마련해서 통과시키려고 그랬는데 그 군소음법이, 물론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2007년, 2008년에 국방부가 검토하던 군소음법

은 8조 원 이상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기재부가 그동안 강력하게 반대해 가지고 도대체 이 정부 가 이 안을 제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당초에 가지고 있던 그 군 소음법을 기재부 반대 때문에 포기를 하고 8조 원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군 소음법이 8000억, 지금 국방위에 계류된 법안을 보면 8000억밖에 안드는 군 소음법을 가지고 왔어요. 쥐꼬리만한 것을 가지고 왔다 이거지요. 그게 전부 다 기재부가 반대해서, 10년 동안 기재부가 반대해 가지고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2차관 안 나오셨어요?

-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김동연** 예, 오늘 2차관 다른 회의……
- ○劉承旼 委員 그러면 예산실장이 기재부의 공 식적인 의견을 한번 대답을 해 보세요. 군공항 주변에 사는 국민들하고 민간공항 주변에 사는 국민들이 차별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산실장?
-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김동연 차별이라고 말씀 하시면……
- ○劉承旼 委員 차별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민 간공항 주변에 사는 국민들은 94년부터 민간공항 소음법에 의거해 가지고 94년부터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 방음 지원사업, 이런 게 이루어져 왔단 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김동연 예.
- ○劉承旼 委員 그리고 오늘 기가 막힌 것은, 존경하는 김용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민간 공항 주변에 대해서 기존에 이미 주민들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해 왔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나가 있는 단계냐 하면 주변에 사는 사람들 공공요금, 상수도, TV 시청료, 전기요금, 공공요금까지 감면해 주자는 법안까지 제출이 됐고 또 주민복지사업, 도서관・체육 시설, 이런 것 지을 때 건설비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비까지도 국고로 지원해 주자는 법안까지 제출된 상황 아닙니까? 기재부 예산실장이 지금 보고 계시지요?
-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김동연 예.
- ○劉承旼 委員 94년부터 17년간 민간공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원을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국민이고 똑같은 세금 내는 대한민국 국민이 군공항 옆에 어떻게 보면 재수 없이 살았다는 이유로 하나도 지원을 못 받는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예산실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김동연** 군공항하고 민간 공항 간 서로 간의 차이에 대해서는 또 조금 생 각할 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 지고 지금 민간공항의 경우 영리 목적이고 군공 항은 아무래도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적 목적이 라는 것도 있지만 군공항은 도심의 외연적 확대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미 군공항 소음을 인지하 고.....

○劉承旼 委員 온 국민이 이용하는 민간공항이 영리 목적이라고요?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김동연 아니요, 제 말씀 은 민간공항하고 군공항의 차이를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군공항의 경우는 도심의 외연적 확대 과 정에서 군공항 소음을 인지하고 이주해 온 사람 듴.....

○劉承旼 委員 예산실장, 오늘 돌아가시면 기재 부장관하고 2차관한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세 요. 이 문제는 기재부가 계속 반대하면 하나도, 한 걸음도 진전이 안 되는 문제인데 기재부가 지 난 10년 동안 발목을 잡아 온 문제입니다.

방금도 제가 기본적인 인식을 물어보는 것입니 다. 무슨 민간공항은 영리 목적이고 군공항은 안 보 …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 가로 발전하기 위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군공 항이 필요한 거고 또 국민들이 왔다 갔다 하고 기업도 왔다 갔다, 그래서 민간공항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둘 다 필요한 것은 똑같은 것인데 제 말씀은 왜 정부가 국고로, 아니면 국고에 해당하 는 돈으로 왜 군공항과 민간공항 주변에 사는 주 민들을 이렇게 차별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국방부가 75웨클, 80웨클짜리 법을 내니까 '돈 없어 안 돼'라고 반대한 게 바로 기재부 예산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난 번 회의에서 기재부 예산 하는 사람이 꼭 이 회 의에 오라고 제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심한 차별이 있을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기재부가 '그동안 17년 동안 차별 해 온 것 잘못됐다. 앞으로는 군공항 주변에 사 는 주민들을 위해서도 예산 쓰겠다'라고 생각을 바꾸시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김용태 의원님 내신 공공 요금 감면이요, 이것 예산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한 것 보면 8243억이에요. 그런데 군 소음법에 기재부가 오케이 한 예산이, 저는 오케이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8562억 원이에요. 전국 48개 군용 비행장의 소음피해 당한 사람들한테 기껏 우리 예산당국이 허용할 수 있는 예산이 8562억 원인 데 민간공항은 공공요금 하나 감면해 준다고 8000억, 이런 법안이 지금 제출되고 있단 말입니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재부 공무원들이 '군용 공 항 주변에 사는 사람들 국가 안보를 위해서 시끄 러워도 참아라' 그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계시 면 폭동이 일어나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 문 제 심각성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도 대답하는 태도가 너무나 매너리즘 에 빠져 가지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도 대체 모르고 지금 기재부에서 계속 10년 동안 발 목을 잡는 거예요.

다음에 회의할 때, 소위 할 때 진전된 답변을 갖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 까?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김동연 예.

○劉承旼 委員 돌아가셔 가지고 장관, 차관하고 한번 이 문제를…… 오늘 이 검토보고서 다 갖고 가셔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그동안 군용공항 주변에 사는 사람들한테 무슨 짓을 해 왔는지를 똑똑히 보시고 그래도 계속 예산을 반대하실 건 지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군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항 관련 법을 우리 특위에 넘겨 달라고 하는 건은 저희들 이 4월 4일자로 의장에게 국방위 소관 법률안 8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로 추가 회송 요청을 했 습니다, 지난번에 요구가 계셔서. 아직 회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쪽의 입장은 넘기지 않으려 고 하는 입장으로 지금 현재는 확인되고 있는 데....

○劉承旼 委員 그렇지 않습니다. 국방위에서 이 야기를 했는데 군용기지 이전에 관한 법은 국방 위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가 되 고 있고 군소음법은 이 특위가 가져가는 것이 맞 다 하는 게 국방위 다수 의견이기 때문에 이야기 를 해 보시면 진전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군현 오케이,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협조를 얻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어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낙성 위원님.

○김낙성 위원 예.

○위원장 이군현 다음 김낙성 위원께서 질의하 시겠습니다.

○**김낙성 위원** 충남 당진 출신 김낙성입니다. 기재부 예산실장님께 질의합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기획재정부는 기타공공기 관에도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계약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명분 아래 공기업, 준정부기관에만 적용되던 것을 발전소를 포함한 기타공공기관에도 국가계약법령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지금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발전소가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를 아마 제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의 경우 규정 제정 이전에는 발전회사 규정에 따라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발전소가 소재해 있는 시·군에만 제한적으로 주 었던 청소용역—예를 들자면—등의 계약을 약 2 억 5000만 원 미만은 광역시로 제한 입찰하도록 하고 2억 50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전국 입찰로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 목적에 보면 "이 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17조의2에 보면 '지역기업의 우대'가 있습니다. 이조항은 금년 3월 30일에 신설되었는데 그 내용을보면 "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에 위배되게 왜 이것을 전국적으로 그동안에 주변지역에 주던 청소용역까지 다풀어서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하셔야 되겠지요, 이것?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김동연 그 내용은 제 소 관이 아니어서 그런데 들어가서 검토를 해 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성 위원 이걸 국회에서는 법까지 만들어

서…… 발전소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던 청소하는 것까지 다 뺏어간다 그 얘기예요. 시정 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실장님, 조력발전이 지금 현재 보면 우리나라 시화호에 254째 설비용량으로 올 해 7월 가동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것 을 비롯해서, 서해안에 5개를 비롯해서 아마 전 국적으로 많이 이것이 건설될 것으로 보는데 아 산만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항로에다 땅을 막아서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상류층에 있는 아산호라든가 삽교호가 말이지요, 이게 폭우가 쏟아져서 일시방류를 했다 그러면 상류지역의 침 수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인데 왜 이 지역에다 이 런 것을 시설하려고 하는 것인지?

문제는 정부가 신생에너지 발전 가격을 일부지원해 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없애고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신생에너지 공급의무비중 2%를 떠넘기는 의무할당제를 도입하다 보니까 각 발전소가 신·재생에너지 중에 생산원가가 비교적 낮은 조력발전 건설에 사활을 지금 현재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력발전 전부 다 계획대로 해서 생산해 봐야 우리나라 총 발전량의 1.2%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세번강 같은 경우 조수간만의 차가 14m까지 돼도 이것을 포기했는데 우리나라서해안 지역은 7.5m밖에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왜 포기를 했느냐? 조력발전은 결과적으로 해양환경 파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 돈만 잔뜩 들여 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못 하면 결국은해양 파괴를 가져오기 때문에 실장께서 이걸 신중히 검토해서…… 너무 이렇게 밀어붙이면, 옛날에 200만 호 주택 지으라고 그래서 주택공사가분양도 안 될 소요도 없는 데다 마구 지어 가지고 지금 현재 부채가 100조 원이 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공사가. 이런 결과를 발전소한테 또 준다. '이것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드립니다.

- ○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실장 김정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 ○김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군현** 추가로 질의…… 최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崔鉛熙 委員 김정관 실장.
- ○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실장 김정관 예.
- ○崔鉛熙 委員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났

을 때 주민 대피거리가 어느 정도였어요?

- ○**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실장 김정관** 보도에 의 하면 20km 밖으로 주민들을 일단 대피시킨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 ○**崔鉛熙 委員** 20km 밖으로?
- ○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실장 김정관 예.
- ○崔鉛熙 委員 언론보도에 보면 30㎞까지 나왔 지요, 대피하라고? 30km 바깥으로 대피하라고.

현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은 얼마 로 돼 있어요?

- ○**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실장 김정관** 지금은 주 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상 지원 범위는 5km로 돼 있습니다.
- ○崔鉛熙 委員 그리고 시행령에 보면 원전사고 가 났을 때 10km 바깥으로 대피하라고 돼 있지 요, 우리 시행령에도? 그렇지요?
- ○**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실장 김정관** 예, 그렇습 니다.
- ○崔鉛熙 委員 그러면 그게 5km까지만 보상하겠 다 해서 5km로 정한 거예요, 주민 안전을 위해서 사고가 날 때 대피하는 거리를 표시한 거예요, 어느 거예요?
- ○**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실장 김정관** 지금 주변 지역지원법은 발전소 건설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5km 이내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사고 시 의 대피 개념보다는 지역주민들의 발전소 수용성 을 높이기 위한……
- ○崔鉛熙 委員 그러니까 원전이 들어오는데, 지 금 원전이 들어와서 선호하는 지역도 있고 상당 히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그리고 원자력문화재단 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이래서 상당히 좋은 분위 기였다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나는 바람에 상당 히 기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지요?
- ○**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실장 김정관** 예, 저도 그 렇게 생각을 합니다.
- ○崔鉛熙 委員 그건 인정을 하지요?
- ○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실장 김정관 예.
- ○崔鉛熙 委員 우리 지역도 분위기가 좋다가 근 래에 들어와서 아주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해져 가는데 그런데 주민 안전이라는 것은 보상 차원 보다도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해서 주민 안전을 우 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실장 김정관** 예, 사고 났 을 때 당연히 안전을 우선으로 합니다.

- ○崔鉛熙 委員 그렇지요? 단순히 원전을 자꾸 주민들이 기피할까봐 원전 하면 이만큼 주변지역 을 지원해 주고 보상해 준다 하니까, 지금 5km로 해 놓은 그게 언제 적이에요? 지금 상당 기간 지 났지요. 법 제정되고?
- ○**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실장 김정관** 89년도 법 제정 시에 상정한 거리입니다.
- ○崔鉛熙 委員 그리고 그 사이에 윤두환 의원뿐 만 아니고 본 위원도 공동발의를 했고 주변지역 을…… 대피 거리를 시행령 자체에서 10km로 해 놓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나서 거기도 20km로, 지금 김 실장 자체가 그렇게 답변했잖아 9.7

그러니까 단순히 수용을 자꾸 안 하려고 그러 니까 원전이 들어가면 이만큼 주변지역에 도움이 된다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만 큼 우리가 지원해 준다…… 그런데 5km라는 것이 무슨 근거가 있는 거리는 아니잖아요?

- ○**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실장 김정관** 89년도 법 제정 시에, 그 당시에 발전소에 민원을 제기한 지역주민들의 대다수가 5km 이내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수용성을 높 이기 위해서 일단……
- ○崔鉛熙 委員 그러면 10km 넘어서 주민들이 문 제제기했다면 10km까지 해 줄 텐데 5km 범위 안 에 들어간 사람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한 거 예요?
- ○**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실장 김정관** 그러니까 89년도 법 제정 당시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 하면 주로 주민들의 민원이 5km 이내 지역의 주 민들이 민원 제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5km로 설정을 했습 니다.
- ○崔鉛熙 委員 그러니까 지원 조금 해 주고, 5 km 내에 무슨 지원해 주는 게 일반 발전소도 5km 지요?
- ○**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실장 김정관** 예, 그렇습 니다.
- ○崔鉛熙 委員 물론 모든 것이 발전소나 원전이 나 사고 안 나는 것을 전제로 하지요. 사고 나면 안 되지요. 안전성에 대해서도 확보를 해야 되지 마는 사람의 일이라는 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대비해 줘야 되잖아 요. 주민 안전도 위하고……
 - 그리고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이제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 주민 수용성을 위해서 거리라도 좀 넓혀 놔야 주민들이 더 희망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실장 김정관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주변지역 범위를 확대할 때 한 세 가지 정도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기존의 지원 규모를 그대로 두고 주변지역을 확대할 경우에 결국은 현재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 ○崔鉛熙 委員 그런데 재정 문제가 생기지요? ○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실장 김정관 예, 그렇습 니다.
- ○崔鉛熙 委員 그런데 재정문제가 생기……

그래서 내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행령으로 5km 내는 기존과 같이 하되 5km 넘는 범위에서는 차등을 두라 이것이지요, 차등을. 똑같이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차등을 둬 가지고 거리가 얼마까지는 몇 %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냐이거예요. 재검토해야 됩니다, 이제.

○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실장 김정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해서 일단 재검토할 필요성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제가 말씀드 린 첫 번째 문제하고, 두 번째 문제는 새로운 재 원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 때문에 국민의 전기요 금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 세 번째는 만약에 10 km로 했을 경우에 10km 이외의 지역, 10에서 12, 3km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또 이것을 확대해 달라 는 요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슷한 그런 수용을 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崔鉛熙 委員 사고를 좀 바꿔 보세요. 김정관 실장 사고를 좀 바꾸라고요.
- ○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실장 김정관 예, 하여튼 위원님 지적을 유념하겠습니다.
- ○崔鉛熙 委員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군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님들께서는 공청회를 포함해서 심도 있게 심사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방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 주 변대책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 다.

장관 및 산하기관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 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강 창 일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철 김 용 구 김 용 태 김 진 표 박 상 은 오 제 세 유 승 민 이 군 현 이 윤 석 이 한 성 최 연 희

○청가 위원(2인)

조영택 조해진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김
 호
 성

 전 문 위 원
 문
 병
 철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폭방주			
장 관	김	관	진
기획조정실장	김	광	우
전력자원관리실장	$\circ]$	선	철
기 획 조 정 관	$\circ]$	선	근
군사시설기획관	김	인	호
전력기획처장	윤	준	로
지식경제부			
제 1 차 관	안	현	호
에너지자원실장	김	정	관
에너지산업정책관	0]	관	섭
자원개발원전정책관	문	재	도
국토해양부			
제 2 차 관	김	희	국
항 공 정 책 실 장	김	광	재
공항항행정책관	장	성	호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김	동	연
한국가스공사사장	주	강	수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시장	김	문	덕
인천국제공항공시부시장	0]	영	근

【보고사항】

한국공항공사부사장

○의안 회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 의원 대표발의)

배

용

수

(2011. 4. 1 박순자·강기갑·김정권·이한성· 유정현 · 유성엽 · 허원제 · 김성동 · 오제세 · 원희목 의원 발의)

4월 4일 회부됨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1. 4. 13 강창일·이윤석·최규성·조영택· 김진표・박은수・강기정・장병완・김재균・ 김재윤 의원 발의) 4월 14일 회부됨